
5주기(2024 ~ 2026) 정신의료기관 평가 시행 안내

2024. 2.



의료기관평가인증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

1 추진배경 및 목적

- 정신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여,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함
- 이와 더불어,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

2 관련근거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정신건강복지법”) 제31조(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)

제31조(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(이하 “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의료법」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.

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주기·범위·절차,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,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「의료법」 제58조(의료기관 인증)

제58조(의료기관 인증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(이하 “의료기관 인증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3 평가대상 및 기간

□ 평가대상

○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

① 「의료법」에 따른 정신병원

※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31조제1항에 의거하여 「의료법」 제58조에 따른 정신병원 인증으로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갈음할 수 있음 [\[참고1 참조\]](#)

② 「의료법」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(이하 “설치과”)

③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중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(이하 “의원”)

※ 다만,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(폐쇄 또는 개방)을 보유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

□ 평가기간

○ 2024년 1월 ~ 2026년 12월(3년)

< 연도별(2024~2026) 평가대상 >

연도	대상
2024	· 2021년 4주기 현지평가를 받은 정신병원 및 설치과 · 인증(조건부인증)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불인증 후 3년이 지난 정신병원 · 최근 3년 이내 평가(인증)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(신규개설, 휴업종료 등)
2025	· 2021년 4주기 현지평가를 받은 설치과* * 2021년 4주기 현지평가를 받은 설치과 중 허가병상 50병상 이상이며, 정신병상이 전체 허가병상의 50% 이상인 설치과 · 2022년 4주기 현지평가를 받은 정신병원 및 설치과 · 2023년 4주기 서면평가를 받은 설치과 · 인증(조건부인증)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불인증 후 3년이 지난 정신병원 · 최근 3년 이내 평가(인증)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(신규개설, 휴업종료 등)
2026	· 2023년 4주기 현지평가를 받은 정신병원, 설치과 및 의원 · 2023년 4주기 서면평가를 받은 설치과 · 인증(조건부인증)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불인증 후 3년이 지난 정신병원 · 최근 3년 이내 평가(인증)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(신규개설, 휴업종료 등)

4 평가기준

- 5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적용 **[참고2 참조]**
- 평가대상 및 규모에 따라 정신병원(200병상 이상 또는 미만), 설치과, 의원 평가기준으로 구분

※ 다만, 허가병상 50병상 이상이며, 정신병상이 전체 허가병상의 50% 이상인 설치과의 경우 '정신병원 평가기준' 적용

< 5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구성 >

구분		구성						
		영역	장	기준	평가항목			
					계	필수	정규	시범
정신병원	200병상 이상	3	11	46	201	48	139	14
	200병상 미만	3	11	46	201	48	129	24
설치과		3	10	34	130	46	69	15
의원		3	10	24	78	39	39	-

- 4주기(2021~2023)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과 동일하되, 일부 문구 현행화 및 오탈자 등 수정 **[별첨1~5의 평가기준 및 표준지침서 참조]**

5 평가신청

- (신청기간) 연도별 상이

※ 연도별 평가 대상기관에 별도 신청 안내 예정

- (신청방법)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(<https://ae.koiha.or.kr>)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**[참고3 참조]**

※ 신규개설 정신의료기관으로 기관 계정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

-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평가일자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정 조율 후 확정 통보(선착순 접수)

※ 월별 평가 가능 개소수가 정해져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- 평가일정 확정 통보 후 '정신의료기관 평가일정 변경 세부규칙'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정 변경 신청 가능 **[참고4 참조]**

- 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평가일정 임의지정 후 통보

6 평가시행

- (평가방법)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 **[참고5 참조]**

※ 서면평가 대상기관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별도 안내

- (평가기간 및 평가위원 수) 평가대상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상이 **[참고6 참조]**

구분		평가기간	평가위원 수*
정신병원	300병상 이상	3일	3인
	200~299병상	2.5일	
	200병상 미만	2일	
설치과		1.5일	
의원		1일	

* (평가위원) 의사, 간호사 등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

- (평가범위) 정신의료기관 내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장소에서, 이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
 - 규정이나 계획 등에 따른 수행 자료는 평가 전월로부터 1년간, 의무기록은 평가 전월로부터 6개월간 자료를 대상으로 함

7 재평가

- (평가대상) 본 평가결과 불합격기관 중 재평가를 희망하는 기관
 - 단, 재평가비용은 의료기관 전액 부담
- (평가신청) 희망평가일 2개월 전
- (평가시행) 본 평가와 동일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적용

8 평가결과 관리

□ 평가항목(ME) 충족기준

점수화 기준	조사결과	점수	점수화 기준	조사결과	점수
80%이상	상	10점	100%	유	10점
60%이상 80%미만	중	5점			
60%미만	하	0점	100% 미만	무	0점

□ 평가등급 판정기준

등급	1. 필수항목	평가항목 평균점수		비고
		2. 전체	3. 기준별	
합격	‘무’ 또는 ‘하’ 없음	8점 이상	모든 기준 5점 이상	1~3 모든 조건 충족
불합격	‘무’ 또는 ‘하’ 1개 이상	8점 미만	5점 미만 1개 이상	1~3 중 한 개라도 해당 시

□ 평가결과 심의

- (심의주체) 정신의료기관 평가심의위원회
- (심의내용) 평가등급(합격 또는 불합격) 및 평가결과, 이의신청 및 심의유보 등에 관한 사항

□ 심의유보

- (대상) 평가결과 합격 판정기준에는 부합하나 평가결과 중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의료기관
 - 개선요청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선결과를 인증원에 제출
 - 개선결과 검토 → 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 → 평가등급 결정
- ※ 개선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선활동보고서 및 관련 근거자료 등을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(<https://ae.koiha.or.kr>)에 입력

□ 평가결과 통보 및 공표

- (결과통보) 평가결과 통보 및 결과보고서 발급
- (개선요청) 평가결과 합격기관 중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선을 요청 받은 경우 개선결과를 인증원에 제출
 - ※ 개선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선활동보고서 및 관련 근거자료 등을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(<https://ae.koiha.or.kr>)에 입력
- (결과공표)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(<https://koiha.or.kr>) - 평가인증 - 평가현황에 평가등급(합격 또는 불합격) 및 세부결과 공표

□ 평가결과 이의신청

- (신청기간)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
- (심의절차) 정신의료기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
 - ※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이의신청 관련 추가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

□ 평가결과 활용

- 정신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·포상,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음

9 문의

-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평가3팀 ☎02-2076-0612, 0629

참고1

정신병원 인증제도 개요

□ 인증대상

- 「의료법」에 따른 정신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
 - ※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31조제1항에 의거하여 「의료법」 제58조에 따른 정신병원 인증으로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갈음할 수 있음

□ 인증기준

- 3주기(2021~2024) 정신병원 인증기준 적용
 - ※ 2025년부터 4주기(2025~2028) 정신병원 인증기준 적용 예정

< 3주기-4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 비교표 >

(단위: 개)

구분		3주기(2021~2024)	4주기(2025~2028)	비고
영역(Domain)		4	4	-
장(Chapter)		12	12	-
기준(Standard)		50	59	9 증가
조사항목 (ME)	계	223	282	59 증가
	필수	52	58	6 증가
	정규	161	207	46 증가
	시범	10	17	7 증가

□ 인증비용

- 자율인증으로 의료기관 전액 부담(금11,800천원)

□ 신청방법

-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(<https://ae.koiha.or.kr>) 온라인 상시 신청

□ 문의

-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평가3팀 ☎02-2076-0640

참고2

5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

□ 정신병원

- 3개 영역(Domain), 11개 장(Chapter), 46개 기준(Standard), 201개 평가항목(ME)

장 (Chapter)	기준 (Standard)		평가항목 (Measurable Element)							
			200병상 이상				200병상 미만			
			계	필수	정규	시범	계	필수	정규	시범
11	46		201	48	139	14	201	48	129	24
I. 기본가치체계	5		19	13	6	-	19	13	6	-
1. 환자안전 보장활동	1.1	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	5	4	1	-	5	4	1	-
	1.2	정신과적 치료환경 관리	4	3	1	-	4	3	1	-
	1.3	정신과적 응급상황 관리	3	3	-	-	3	3	-	-
	1.4	낙상 예방활동	3	-	3	-	3	-	3	-
	1.5	외출 및 외박 관리	4	3	1	-	4	3	1	-
II. 환자진료체계	21		90	18	67	5	90	18	61	11
2. 진료전달체계와 평가	2.1.1	입원 수속 및 유지 관리	5	3	2	-	5	3	2	-
	2.1.2	환자진료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	4	-	4	-	4	-	4	-
	2.1.3	퇴원 및 전원 관리	4	-	4	-	4	-	4	-
	2.2	입원환자 초기평가	4	-	4	-	4	-	4	-
	2.3.1	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관리	4	-	4	-	4	-	4	-
	2.3.2	검사실 안전관리	3	-	-	3	3	-	-	3
3. 환자진료	3.1.1	입원환자 치료계획	6	-	6	-	6	-	6	-
	3.1.2	동반질환 관리	3	-	3	-	3	-	2	1
	3.1.3	치료프로그램	8	-	6	2	8	-	4	4
	3.1.4	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	4	-	4	-	4	-	2	2
	3.1.5	작업치료	2	-	2	-	2	-	2	-
	3.1.6	특수치료	2	-	2	-	2	-	2	-
	3.2.1	심폐소생술 관리	4	-	4	-	4	-	4	-
	3.2.2	격리	4	4	-	-	4	4	-	-
	3.2.3	강박	4	4	-	-	4	4	-	-
4. 의약품관리	4.1	의약품 보관	4	-	4	-	4	-	4	-
	4.2	처방 및 조제	5	-	5	-	5	-	5	-
	4.3	투약 및 모니터링	5	-	5	-	5	-	5	-

장 (Chapter)	기준 (Standard)		평가항목 (Measurable Element)							
			200병상 이상				200병상 미만			
			계	필수	정규	시험	계	필수	정규	시험
5.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	5.1	환자권리 존중	9	7	2	-	9	7	1	1
	5.2	불만고충처리	3	-	3	-	3	-	3	-
	5.3	동의(서)	3	-	3	-	3	-	3	-
III. 조직관리체계	20		92	17	66	9	92	17	62	13
6.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	6.1	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	6	-	6	-	6	-	4	2
	6.2	환자안전사건 관리	4	-	3	1	4	-	3	1
7. 감염관리	7.1	감염관리체계	5	1	4	-	5	1	4	-
	7.2	세척·소독·멸균 및 세탁물 관리	7	-	5	2	7	-	5	2
	7.3	병동 내 환경위생관리	3	-	2	1	3	-	2	1
	7.4	급식서비스 관리	6	-	6	-	6	-	6	-
8. 경영 및 조직운영	8.1	합리적인 의사결정	3	-	3	-	3	-	3	-
	8.2	의료기관 운영방침	4	-	4	-	4	-	4	-
9. 인적자원관리	9.1	인사정보 관리	3	-	3	-	3	-	1	2
	9.2	직원교육	4	1	3	-	4	1	3	-
	9.3	직원 안전관리 활동	4	4	-	-	4	4	-	-
	9.4	폭력 예방 및 관리	4	-	3	1	4	-	3	1
10. 시설 및 환경관리	10.1	시설 및 환경 관리	4	-	4	-	4	-	4	-
	10.2	설비시스템 관리	5	-	5	-	5	-	5	-
	10.3	설치시설 관리	4	3	1	-	4	3	1	-
	10.4	위험물질 관리	5	-	5	-	5	-	5	-
	10.5	의료기기 관리	3	-	3	-	3	-	3	-
	10.6	화재 안전관리 활동	9	8	1	-	9	8	1	-
11. 의료정보/의무기록 관리	11.1	의료정보/의무기록 관리	4	-	3	1	4	-	3	1
	11.2	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	5	-	2	3	5	-	2	3

□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(설치과)

- 3개 영역(Domain), 11개 장(Chapter), 34개 기준(Standard), 130개 평가항목(ME)

장 (Chapter)	기준 (Standard)	평가항목 (Measurable Element)			
		계	필수	정규	시험
11	34	130	46	69	15
I. 기본가치체계	5	19	13	6	-
1. 환자안전보장활동	1.1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	5	4	1	-
	1.2 정신과적 치료환경 관리	4	3	1	-
	1.3 정신과적 응급상황 관리	3	3	-	-
	1.4 낙상 예방활동	3	-	3	-
	1.5 외출 및 외박 관리	4	3	1	-
II. 환자진료체계	16	63	18	41	4
2. 진료전달체계와 평가	2.1.1 입원 수속 및 유지 관리	5	3	2	-
	2.1.2 환자진료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	2	-	2	-
	2.1.3 퇴원 및 전원 관리	4	-	4	-
	2.2 입원환자 초기평가	3	-	3	-
	2.3.1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관리	-	-	-	-
	2.3.2 검사실 안전관리	-	-	-	-
3. 환자진료	3.1.1 입원환자 치료계획	5	-	5	-
	3.1.2 동반질환 관리	3	-	2	1
	3.1.3 치료프로그램	6	-	4	2
	3.1.4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	-	-	-	-
	3.1.5 작업치료	2	-	2	-
	3.1.6 특수치료	2	-	2	-
	3.2.1 심폐소생술 관리	3	-	3	-
	3.2.2 격리	4	4	-	-
	3.2.3 강박	4	4	-	-
4. 의약품관리	4.1 의약품 보관	4	-	4	-
	4.2 처방 및 조제	-	-	-	-
	4.3 투약 및 모니터링	5	-	5	-
5.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	5.1 환자권리 존중	8	7	-	1
	5.2 불만고충처리	3	-	3	-
	5.3 동의(서)	-	-	-	-

장 (Chapter)	기준 (Standard)	평가항목 (Measurable Element)			
		계	필수	정규	시험
Ⅲ. 조직관리체계	13	48	15	22	11
6.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	6.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	3	-	-	3
	6.2 환자안전사건 관리	2	-	2	-
7. 감염관리	7.1 감염관리체계	3	1	2	-
	7.2 세척·소독·멸균 및 세탁물 관리	5	-	5	-
	7.3 병동 내 환경위생관리	3	-	2	1
	7.4 급식서비스 감염관리	-	-	-	-
8. 경영 및 조직운영	8.1 합리적인 의사결정	-	-	-	-
	8.2 의료기관 운영방침	-	-	-	-
9. 인적자원관리	9.1 인사정보 관리	1	-	1	-
	9.2 직원교육	4	1	3	-
	9.3 직원 안전관리 활동	2	2	-	-
	9.4 폭력 예방 및 관리	4	-	3	1
10. 시설 및 환경관리	10.1 시설 및 환경 관리	-	-	-	-
	10.2 설비시스템 관리	-	-	-	-
	10.3 설치시설 관리	4	3	1	-
	10.4 위험물질 관리	-	-	-	-
	10.5 의료기기 관리	3	-	-	3
	10.6 화재 안전관리 활동	9	8	1	-
11. 의료정보/의무기록 관리	11.1 의료정보/의무기록 관리	-	-	-	-
	11.2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	5	-	2	3

□ 정신건강의학과의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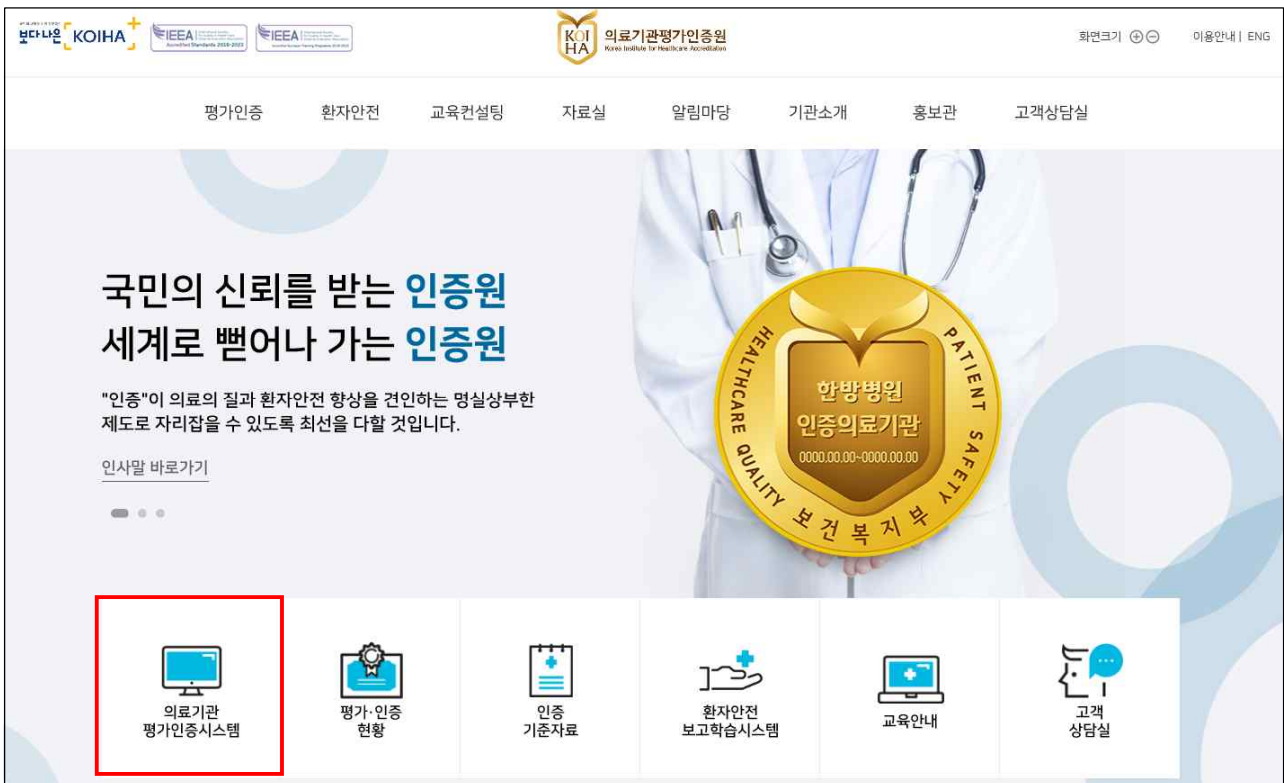
- 3개 영역(Domain), 10개 장(Chapter), 24개 기준(Standard), 78개 평가항목(ME)

장 (Chapter)	기준 (Standard)	평가항목 (Measurable Element)			
		계	필수	정규	시범
10	24	78	39	39	-
I. 기본가치체계	4	12	10	2	-
1. 환자안전보장활동	1.1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	3	3	-	-
	1.2 정신과적 치료환경 관리	4	3	1	-
	1.3 정신과적 응급상황 관리	2	2	-	-
	1.4 외출 및 외박 관리	3	2	1	-
II. 환자진료체계	11	36	17	19	-
2. 진료전달체계와 평가	2.1.1 입원 수속 및 유지 관리	4	3	1	-
	2.1.2 퇴원 관리	3	-	3	-
	2.2 입원환자 초기평가	3	-	3	-
3. 환자진료	3.1.1 입원환자 기록	2	-	2	-
	3.1.2 치료프로그램	2	-	2	-
	3.2.1 심폐소생술 관리	2	-	2	-
	3.2.2 격리	4	4	-	-
	3.2.3 강박	4	4	-	-
4. 의약품 관리	4.1 의약품 보관	2	-	2	-
	4.2 투약	4	-	4	-
5.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	5.1 환자권리 존중	6	6	-	-
III. 조직관리체계	9	30	12	18	-
6. 환자안전사건 관리	6.1 환자안전사건 관리	2	-	2	-
7. 감염관리	7.1 멸균물품 및 세탁물 관리	4	-	4	-
	7.2 위생관리	3	1	2	-
	7.3 급식서비스 관리	4	-	4	-
8. 인적자원관리	8.1 법적인력 적정성 및 직원교육	3	1	2	-
	8.2 직원 안전관리 활동	2	2	-	-
9. 시설 및 환경 관리	9.1 설치시설 관리	4	2	2	-
	9.2 화재 안전관리 활동	6	6	-	-
10. 의료정보/의무기록 관리	10.1 의료정보/의무기록 관리	2	-	2	-

□ 1단계 :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 접속

-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oiha.or.kr>) 메인화면 -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 클릭

<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화면 >



□ 2단계 :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 로그인

○ 의료기관별 사용 중인 계정으로 로그인

○ 신규개설 등으로 계정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

※ 약관 동의 ▷요양기관번호로 가입 여부 확인 ▷정보 입력 ▷가입 완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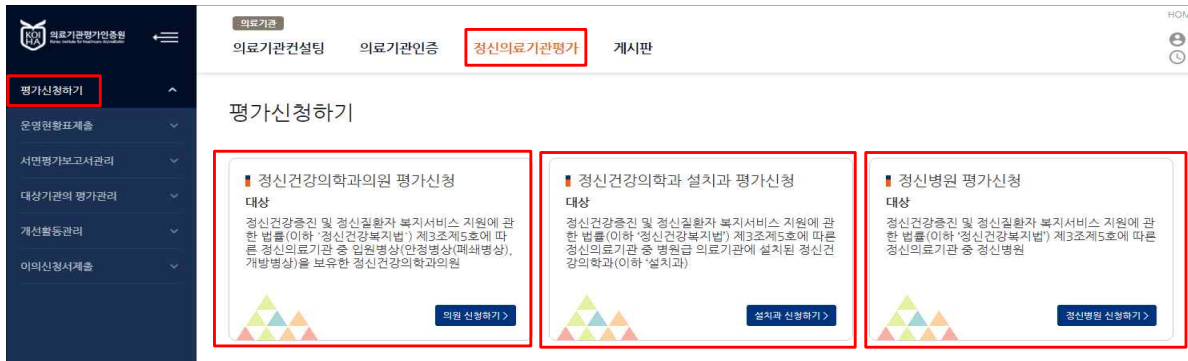
<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 로그인 화면 >

<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 회원가입 화면 >

□ 3단계 : 정신의료기관 평가 신청

- 정신의료기관평가 - 평가신청하기 클릭 후, 해당 평가대상 종류 (정신병원, 설치과, 의원) 선택

< 정신의료기관평가 종류 선택 화면 >



- 평가 신청서 작성 후, 하단의 신청서 제출 클릭
 - 희망평가일자는 평가시작일로 화요일 또는 수요일 중 선택

정신의료기관 평가 신청 화면(예시)

정신의료기관 평가 신청서(설치과 평가용)											
평가구분	☒ 현지평가										
신청구분	☒ 평가신청 ☐ 재평가신청				신청주기	5주기					
의료기관명	병원				의료기관종별	종별선택					
요양기관번호					개설자 성명 (법인명)						
주소 및 담당부서	소재지										
		담당자	부서명	Q/실		직책	팀장		성명	김원영	
			전화	02-1234-5678		팩스	02-0000-				
	기관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			http://www.						
	담당자 전자우편 주소										
	*평가 담당자	담당자 휴대전화				010-1234-5678					
		담당자 정보와 동일 ☐									
		부서명			직책			성명			
		전화	02	-	0000	-		이메일		@	
		휴대전화	010	-	9876	-					
병상수	총 허가병상수 (A+B+C)						병상				
	개방병상 (A)						병상				
	안정병상(폐쇄병상) (B)						병상				
	정신병상외 병상수 (C)						병상				
최대평가일자											
그 밖의 의견											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)에 따라 정신의료기관평가를 신청합니다. 2021년 03월 08일 신청인											
정신의료기관평가 전담기관의 장 귀하											
※ 현재 신청서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'정신건강의학과' 평가신청서입니다. ※ 평가 담당자는 실제 평가를 담당하며 인증원과 연락, 공문을 수신할 담당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후후 평가담당자 변경 시 담당자 정보를 수정)											
신청서 제출											

참고4

정신의료기관 평가일정 변경 세부규칙

□ 변경대상 및 조건

변경대상	사유	제출자료	연기 기한	비고
서비스 영역, 물리적 구조 50% 이상 변경 예정 시	공사 진행으로 허가병상 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물리적 구조 변경(50% 이상) 공사 진행 시 (단, 인테리어 변경 등 단순 공사는 제외)	공사 계약서 (시작일/종료일), 건축도면(전/후), 건축허가 관련 자료 등	공사 완료 예정일로부터 3~12개월 이내 평가 시행	부득이하게 공사가 연기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시 연기 일정 조정 가능(1회에 한함)
	연기 신청일 기준 이전 3개월 내(동안) 인력이 50% 이상 변동되었거나 증가 또는 감소 시 (기준: 연기신청일, 의료기관 전체 인력)	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,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고용정보현황 조회 자료 등	연기신청일로 부터 3~12개월 이내 평가 시행	-
	의료기관 이전 예정	이전 부지 매입 관련 문서, 공사 계약서, 임대차 계약서, 공사 현장 사진 등	이전완료일로 부터 3~12개월 이내 평가 시행	부득이하게 이전이 연기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시 연기 일정 조정 가능(1회에 한함)
평가 예정일 전 의료기관의 양도·양수 예정	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시 (단, 의료법인 대표 변경 또는 공동 대표 추가, 삭제, 일부 변경 등을 통한 개설자 변경 시 제외)	양도양수 계약서(확인서), 의료기관 개설허가증(뒷면 변경 이력 포함) 등	개설자 변경일로부터 3~12개월 이내 평가 시행	-
기타 정당한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	천재지변, 정부기관 감사/조사 등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	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	해당 사유 종료일로부터 3~12개월이내 평가 시행 ※ 다만,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기 기한 조정 가능	-

※ 평가준비 미흡 등 변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정 변경 불가하며,
제출자료가 미흡한 경우 일정 변경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

□ 변경신청 등

- (신청기한) 평가일정으로부터 최소 1개월 전(이후 신청 불가)
- (신청방법) 제출자료 첨부하여 공문 발송(mental@koiha.or.kr)
- (변경횟수) 5주기(2021~2023) 내 1회(추가 변경 불가)
- (유의사항) 변경된 평가일정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따름
 - ※ 예) 5주기(2024~2026) 평가대상 기관의 변경된 평가일정이 6주기(2027~2029)에 해당될 경우 6주기 평가기준으로 평가

참고5

정신의료기관 평가 절차도



참고6

정신의료기관 평가일정 예시

□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 : 3인 3일

1일차	평가위원 1	평가위원 2	평가위원 3
08:30 - 09:30	평가위원 및 평가계획 소개, 의료기관 현황 발표*		
09:30 - 12:00	규정 및 문서검토		
12:00 - 13:00	점심 식사		
13:00 - 14:30	환자추적조사	환자추적조사	시설 및 환경 관리 시스템 추적조사
14:30 - 16:00			
16:00 - 17:00	평가위원 결과종합 및 논의(주요쟁점논의/ 평가일정조정)		

* 의료기관 현황, 질 향상과 환자안전 운영체계 및 질 향상 활동 사례 1개 소개

2일차	평가위원 1	평가위원 2	평가위원 3
08:30 - 09:30	전일 평가 결과 및 평가계획 보고		
09:30 - 11:00	환자추적조사	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시스템 추적조사	감염관리 시스템 추적조사
11:00 - 12:00		환자추적조사	환자추적조사
12:00 - 13:00	점심 식사		
13:00 - 14:30	의약품 관리 시스템 추적조사	경영진 서류검토	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추적조사
14:30 - 16:00	경영진 인터뷰		
16:00 - 17:00	평가위원 결과종합 및 논의(주요쟁점논의/ 평가일정조정)		

3일차	평가위원 1	평가위원 2	평가위원 3
08:30 - 09:30	전일 평가 결과 및 평가계획 보고		
09:30 - 12:00	의료정보/의무기록 관리 시스템추적조사, 환자추적 미진한 부분		
12:00 - 13:00	점심 식사		
13:00 - 15:30	(평가팀) 결과 종합 및 보고서 작성		
15:30 - 16:00	(평가팀장) 의료기관과 최종 평가결과 상호 확인		
16:00 - 17:00	총평		

□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정신병원 : 3인 2.5일

1일차	평가위원 1	평가위원 2	평가위원 3
13:00 - 14:00	평가위원 및 평가계획 소개, 의료기관 현황 발표*		
14:00 - 16:30	규정 및 문서검토		
16:30 - 17:00	평가위원 결과종합 및 논의(주요쟁점논의/ 평가일정조정)		

* 의료기관 현황, 질 향상과 환자안전 운영체계 및 질 향상 활동 사례 1개 소개

2일차	평가위원 1	평가위원 2	평가위원 3
08:30 - 09:30	평가 계획 보고		
09:30 - 12:00	환자추적조사	환자추적조사	환자추적조사
		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시스템 추적조사	감염관리/ 시설 및 환경 관리 시스템추적조사
12:00 - 13:00	점심 식사		
13:00 - 14:30	의약품 관리 시스템추적조사	경영진 서류검토	인적자원관리 시스템추적조사
14:30 - 16:00	경영진 인터뷰		
16:00 - 17:00	평가위원 결과종합 및 논의(주요쟁점논의/ 평가일정조정)		

3일차	평가위원 1	평가위원 2	평가위원 3
08:30 - 09:30	전일 결과보고 및 평가계획		
09:30 - 12:00	의료정보/의무기록 관리 시스템추적조사, 환자추적 미진한 부분		
12:00 - 13:00	점심 식사		
13:00 - 15:30	(평가팀) 결과 종합 및 보고서 작성		
15:30 - 16:00	(평가팀장) 의료기관과 최종 평가결과 상호 확인		
16:00 - 17:00	총평		

□ 200병상 미만 정신병원 : 3인 2일

1일차	평가위원 1	평가위원 2	평가위원 3
08:30 - 09:30	평가위원 및 평가계획 소개, 의료기관 현황 발표*		
09:30 - 12:00	규정 및 문서검토		
12:00 - 13:00	점심 식사		
13:00 - 15:00	환자추적조사	감염관리 시스템 추적조사	시설 및 환경 관리 시스템 추적조사
15:00 - 16:00	경영진 서류검토	환자추적조사	환자추적조사
16:00 - 17:00	평가위원 결과종합 및 논의(주요쟁점논의/ 평가일정조정)		

* 의료기관 현황, 질 향상과 환자안전 운영체계 및 질 향상 활동 사례 1개 소개

2일차	평가위원 1	평가위원 2	평가위원 3
08:30 - 09:30	전일 결과보고 및 평가계획		
09:30 - 11:00	의약품 관리 시스템 추적조사	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시스템 추적조사	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추적조사
11:00 - 12:00	경영진 인터뷰		
12:00 - 13:00	점심 식사		
13:00 - 14:00	의료정보/의무기록 관리 시스템 추적조사, 환자추적조사 미진한 부분		
14:00 - 16:00	(평가팀) 결과 종합 및 보고서 작성		
16:00 - 16:30	(평가팀장) 의료기관과 최종 평가결과 상호 확인		
16:30 - 17:00	총평		

□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(설치과) : 3인 1.5일

1일차	평가위원 1	평가위원 2	평가위원 3
13:00 - 14:00	평가위원 및 평가계획 소개, 의료기관 현황 발표*		
14:00 - 16:30	규정 및 문서검토		
16:30 - 17:00	평가위원 결과종합 및 논의(주요쟁점논의/ 평가일정조정)		

* 의료기관 현황, 질 향상과 환자안전 운영체계 및 질 향상 활동 사례 1개 소개

2일차	평가위원 1	평가위원 2	평가위원 3
08:30 - 09:00	전일 결과보고 및 평가계획		
09:00 - 10:00	의약품 관리 시스템 추적조사	환자추적조사	인적자원관리/ 시설 및 환경 관리 시스템 추적조사
10:00 - 10:30	환자추적조사		
10:30 - 12:00	환자추적조사	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/ 감염관리 시스템 추적조사	환자추적조사
12:00 - 13:00	점심 식사		
13:00 - 14:00	의료정보/의무기록 관리 시스템 추적조사, 환자추적조사 미진한 부분		
14:00 - 16:00	(평가팀) 결과 종합 및 보고서 작성		
16:00 - 16:30	(평가팀장) 의료기관과 최종 평가결과 상호 확인		
16:30 - 17:00	총평		

□ 의원 : 3인 1일

시간	평가위원 1	평가위원 2	평가위원 3
08:30 - 09:00	평가위원 및 평가계획 소개, 의료기관 현황 발표		
09:00 - 11:00	규정 및 문서검토		
11:00 - 12:00	추적조사 시행		
12:00 - 13:00	점심 식사		
13:00 - 14:30	추적조사 시행		
14:30 - 15:30	추적조사 미진한 부분		
15:30 - 16:30	평가위원 결과종합 및 논의, (평가팀장) 의료기관과 최종 평가결과 상호 확인		
16:30 - 17:00	총평		